

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0년 2월 7일
제 안 자 : 강기필 의원외 4인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개정으로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새로이 변경·조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용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정기회의 명칭을 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부합되도록 변경 조정함.(안제2조 제2항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

개정조례(안)

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중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) ①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p> <p>③~⑤(생 략)</p>	<p>제2조(감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차 정례회</u>,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